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52

발의연월일: 2021. 5. 17.

발 의 자:이채익・백종헌・김예지

강민정 • 이은주 • 박수영

송재호 · 성일종 · 유창현

서병수・윤주경・구자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포츠윤리센터는 경기단체 소속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, 운영 예정 중에 있음.

하지만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징계에 관한 정보 범위에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이 해당 부대에 서 받은 징계 정보가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이에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 간 인권침해 사건으로 「군인사법」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역시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.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

사건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함(안 제18조의13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13제1항 중 "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"를 "경기단체, 운동경기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체육부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체육단체"를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체육단체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단체 등은"을 "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운동경기부의"를 "운동경기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체육부대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제18조의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축·운영 등) ① -----축·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 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 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 -----경기단체, 운동 경기부(이하 이 조에서 "체육 경기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등"이라 한다)에 소속된 선 국방부장관 소속의 체육부대---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 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<u>체육단</u> -----관계 중앙 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행정기관의 장 또는 체육단체-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 별한 사유(개인정보 보호에 관 -----자는-----한 사유는 제외한다)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(3)	체육	회능의	의 경	├(<u>운</u>	<u> </u>	<u>フ</u>	무
<u>의</u>	경우	소속	된 기]관	및	단	체
의	장을	말한	다. 여	이하	제4	항-	에
서	같다)	은 소	속된	l 선·	수,	체	육
지	르자, <i>→</i>	심판	및 인	직원	을	징	계
하늯	는 경-	우 제	1항여	따	른	징	계
정년	보시스	템에	관련	<u></u> 정	보를	<u>!</u>	게
재 중	하여야	하다					

•
③
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
장관 소속의 체육부대의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④・⑤ (생략)